

[2016.6.29] [

2016 - 116 , 2016.6.29,]



() 044 - 202 - 3329

1 () 『 (' ') 』 16 3
(' ' , .)

2 () 『 』 9 1

- 1.
- 2.
- 3.
- 4.
- 5.

1 < > .
17 4 , 1

3 () 2 1 4

- 『 』 ,
9 2 ,
1 ,
1. ' ,
() ,

2. 1

4 ()

5 () 16 1 2
100 30

1. , , ,

2.

,

6 ()

2 (2 12 31)

8

2015 1 1

< 2016-116 ,2016.6.29>

< 붙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1. 신청자의 적격성

- 가.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한다.
- 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를 주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해당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수익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가. 장애인근로자 등의 정의

- 1) "장애인근로자"란 신청일 기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영업직 등의 직원은 제외한다.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②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2) "전체 근로자"란 생산시설의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서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의 전부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4.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직원 및 일용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 3) "중증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 ② 뇌병변장애인(1~3급), 심장장애인(1~3급)
 - ③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 ④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3급)
 - ⑤ ③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3급)
- 4) 2)의 “일용근로자”란 생산시설의 전체 근로자만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납기일 준수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지급 내용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5)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고용연월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 포함), 출·퇴근기록부, 기타 관련 결재서류(임금지급 기안문서, 채용 기안문서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 6)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생산시설 외의 타 업체 등에 근로 또는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타 업체 소속 임직원이 동 생산시설의 생산·영업 등 운영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겸직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7) 생산시설에서 제시된 근로자 외의 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원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

- 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2) 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충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

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

1)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 ①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장애인근로자/전체근로자) × 100%
- ②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근로자/장애인근로자) × 100%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계약 시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1) 사업장의 대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사업장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

가.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 공정 참여율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전체근로자 근로시간) × 100%

나. '가'의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가. 직접생산의 정의

- 1)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생산 공장에서 해당 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특정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동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생산 공장

- 1) 해당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으로 확인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이유로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한다.
- 2) 생산 공장의 협소로 인해 설립승인 지역 내 생산 공장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법인등 기부등본상 등재 여부 등 관련 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 3) 생산 공장의 실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명칭이 생산시설 명의임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 4)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운영법인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거나,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생산시설에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③ 해당 생산시설이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⑤ 타업체의 사무실 또는 공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시설이 타동종 업체의 공장 또는 사업장 내부에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
 - ⑥ 생산공장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생산공장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타 업체의 제2공장 또는 지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5)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건물등 기부에 생산시설의 소유로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6)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 7) 사업자등록증명상 ‘업태’ 및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해당 품목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 1)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 2)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소재지에 동 설비가 설치 및 가동이 되어야 하고, 생산시설 명의의 구입에 따른 증빙서류,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비임이 증빙되어야 한다.
- 3)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보증금 등재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③ 생산설비를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생산설비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 ⑤ 생산설비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생산설비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
- 4)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 및 생산시설 재무제표 등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5) 생산설비 가동 여부는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수주물량 미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이 없

는 경우 현장 확인시 생산설비의 가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라. 전문기술인력

- 1) 해당 품목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동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생산인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전문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는 생산시설의 대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정상적인 임금지급내역, 생산 과정에의 참여여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 보유 여부, 생산설비의 취급가능 여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전문기술인력을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 1) 생산시설의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가 생산 공정별로 현장 확인되어야 한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수불관리대장, 매입장, 지출기안, 대금지급 통장 내역, 외주가공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가 생산시설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생산품 재고관리, 판매관리, 매출장, 생산일지, 수입기안, 수입대금 통장내역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가 생산시설의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생산·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직접 생산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 및 일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명의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운영법인 등과 생산시설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바.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

- 1) 타 업체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부품 등을 시설·설비 구축 및 가동 없이 단순히 조립 공정 등 노동력에 의존하여 완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해당품목의 제조·판매 등을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동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 3) 타 업체 등과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시설의 생산설비·작업장 등이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4) 생산시설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 정상적인 대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무상·임의지급 등은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 5) 생산품별 납품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납품한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 6)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또는 포장지에 생산시설 명의로 제조·판매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의 특성상 생산시설 명의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